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개선방향\*

권기욱\*\*

대구대학교 교수

### 《요약》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를 규범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상 관련된 이론들을 규명하고, 선진 외국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개별화교육계획과 재정지원의 연계성 부족, 관련서비스 재정지원 부족, 장애영아 교육 및 개별가족서비스 지원 재정 부족, 위험 영유아 재정지원의 부족, 장애영유아 보육재정 지원 단가의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장애영유아(3~5세) 교육·보육재정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은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로 확대하고, 장애영아(0~2세) 교육재정 및 개별가족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고, 장애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에게도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영유아 보육경비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교육재정, 장애영유아보육재정

### 1. 머리말

영유아기는 인간의 사고·행위·정서적 안정의 토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고 (Scrivner, & Barbara, 2002 : 3), 조그마한 긍정적 변화도 장기적인 혜택을 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Fraser, 1996 : 8).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영유아는 발달에 적절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후에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평생 동안 복지재정의 지출이나 인력 상실 등 더 많은 부담을 갖게 한다.

장애영유아들은 모두 적절한 교육·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영유아들과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1998 : 19). 이를 위하여 국가사회는 장애영유아들의 특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18118@hanmail.net)

## 2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제7권 4호)

본 연구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재정은 유치원 교육비, 보육재정은 보육시설의 보육재정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⑥항에는 모든 교육재정지원정책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정책과 보육재정지원정책이 법제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영유아들의 교육권 및 보육권을 보장하고, 능력에 적절한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안정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정책을 반영하면서 그들의 교육·보육경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Vermont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 7). 따라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모든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에 관련된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에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영유아들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제도를 개선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은 재정의 적정성·균등성·투입방향 등에서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상태가 ‘문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방향’이 추구할 규범적·이상적 상태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선진 외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에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정책이 법제화된 재정지원제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지향할 규범적 기준이 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원리 및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원리를 규명한다.

### 1.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개념

장애영유아의 교육프로그램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며(유아교육법 제2조①항), 보육프로그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①항).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장애영유아는 0세에서 취학 전 유아로 정의한다. 영아는 0~2세, 유아는 3~6세 미만의 취학 전 유아를 의미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유아’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를 가진 자(유아교육법 제15조①항)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영유아의 개념 정의에서 장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를 사용한다[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Part C]. 영유아 발달지체의 측정은 주에 따라 다르나, 5개 발달영역 즉, 인지발달, 신체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 혹은 정서적 발달, 적응발달 중 1개 영역 이상에서 표준편차 -2, 2개 발달영역 이상에서 표준편차 -1.5를 적용하기도 한다(Shackelford, 2002 : 3~6). 장애영유아에서 ‘장애’의 개념은 발달지체나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의 목적이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과 함께 장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개념을 발달지체를 가진 영유아 및 발달지체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로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요구되는 자로 정의한다(Danaher, 2001 : 17). 장애영유아 모두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는 규범적으로 신체발달·인지발달·의사소통발달·사회정서발달·적응발달에서 1개 영역 이상에 발달지체를 가졌거나, 발달지체의 위험을 가지면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은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의미한다(Susman-Stillman, & Schirvay, 2000 : 44). 특수교육은 장애영유아의 특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수업이며(언어치료서비스, 여행훈련, 직업교육 포함), 특수하게 설계된 수업은 장애영유아의 요구에 적절한 수업의 내용·방법·전달을 포함한다. 관련서비스는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발달·정정·기타 지원 서비스 및 수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언어치료, 청각서비스, 심리서비스, 신체치료, 레크리에이션, 장애영유아 확인과 사정, 상담서비스, 오리엔테이션과 이동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다(Ohio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 26). 보육시설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장애영유아의 개념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라는 개념과는 달리,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유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장애가 야기된 자, 발달지체를 경험하는 자, 발달지체를 가질 확률이 높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조건을 진단받은 자, 조기중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구체적 발달지체의 위험에 있는 영유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의미한다.

## 2.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원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의 지침이 될 주요 원리들을 규명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은 장애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불균등을 조기에 방지하며, 장애영유아 자신·가족·국가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며, 부모의 취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Myers, 1991 : 8).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보육기회균등 : 장애영유아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영유아와 같이 행복하게 성장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Yudof, et. al., 2002 : 770).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기회균등은 헌법 제31조①항의 교육기회균등 이념의 구현이며, 불리한 만큼 차별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수직적 기회균등과 장애영유아들 간에 균등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수평적 기회균등의 실현이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 :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묘사한 진술된 계획이다(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1998 : 19). 그리고 장애영유아 개인의 특수요구에 근거하여 개발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개별 장애영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포함한다.

셋째,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보육 :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보육은 모든 장애영유아가 무상으로 공공재정에 의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Ohio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 23). 무상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부모에게 경비부담이 없고, 공공의 감독 하에 공공경비로 제공되며(Scrivner, & Wolfe, 2002 : 1), 개별화교육계획에 정의된 대로 장애영유아의 특수한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통합교육·보육 : 통합교육·보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영유아집단에서 장애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6항). 장애영유아는 일반 교육·보육프로그램에 통합될 권리를 갖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통합은 서비스가 보호에서 교육 및 인간개발로 전환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97 : 14). 통합은 0~2세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가정과 같은 상황에 조치되고, 개별 가족의 요구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일과를 가지며, 가족의 참여가 많으며, 보호나 수업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3~5세는 주로 정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조치된다.

다섯째, 최소제한적환경조치 : 장애영유아는 특수한 상황을 제공하기보다 특수한 수업을 요구한다(Noonan, & McCormick, 1993 : 16).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은 특수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장애를 갖지 않은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

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장소는 가능한 한 가정에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어 비학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조기중재 : 조기중재는 영유아의 생활에서 발달문제나 발달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것을 확인하고,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로 발달지체나 발달지체의 위험이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조기중재는 0~2세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후에 더 강력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영유아에게 예방적 수단으로 경비투자는 추후 요구되는 더 비싼 프로그램 및 치료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 10). 모든 0~2세 장애영아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Connecticut University, Health Center, 1996 : 4).

### 3.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의 원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는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적절하면서 널리 이용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Myers, 1993 : 3). 재정은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적절성의 준거는 재정의 적정성, 균등성, 효율성, 책무성이다(Hadderman, 2001 : 23). 재정의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의미하며, 제도 상 보장된 '무상의 공교육제도'로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정의 적정성, 균등성, 효율성, 책무성에 초점을 둔다.

#### 1) 재정의 적정성

재정의 적정성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자원수준을 지칭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적정성은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가 성취해야 하는 목적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Hansen, 2001 : 12).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적정한 교육·보육재정지원체제의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목적을 명료화 하고, 둘째, 개별 교육·보육 목적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확인하며, 셋째,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의 적정성은 개념적으로 재정분배의 단위를 개별 장애영유아로 한다. 그리고 개별 장애영유아의 '적정한 성취'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고, 다양한 산출영역에서 성취의 상세화를 요구한다(Yudof, et. al., 2002 : 773). 재정의 적정성은 재정의 균등성을 보상하고, 효율성·책무성·안정성에 의하여 지원된다. 재정의 적정성 확보 없이 다른 원리들만으로 합리적인 재정을 보장할 수 없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적정성은 장애영유아 개인별로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 2) 재정의 균등성

재정의 균등성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분배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치이다. 균등성에는 수평적 균등성과 수직적 균등성이 있다.

수직적 균등성은 다른 상황에 있는 영유아들은 다르게 채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의 투입을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산출의 균등에 연계하여 규명한다. 개별 장애영유아들의 균등한 산출에 필요한 자원의 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수직적 균등성은 주로 일반영유아와 장애영유아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Yudof, et. al., 2002 : 773). 수평적 균등성은 균등한 상황에 있는 영유아들은 균등하게 채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영유아 집단 내에서 균등성을 확보하는 데 합리적인 준거가 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균등성은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경비지출의 균등이 아니라 교육·보육 산출에서 균등에 초점이 주어진다. 장애영유아들은 요구, 배경, 교육적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등한 재정의 투입보다 교육·보육 산출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균등의 기준으로 채택한다(Hayes, 1997 : 23). 균등성은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이 국가 전체 지역에 통일되면서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요구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3) 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재정의 효율성은 재정 집행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치이다. 재정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투입된 경비에 상응한 효과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보다 수업활동에 보다 많은 경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재정의 지출에서 절약이나 생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책무성은 재정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재정 투입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되며, 건전한 재정 관리와 경비-효과성의 기초를 형성한다(Hayes, 1997 : 67).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하면서 경비-효과적인 선택을 하면, 청중에게 재정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 III. 주요 외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영유아 교육·보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련된 대답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스웨덴과 같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다. 전자는 국가관리지향이고, 후자는 자율

화지향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전통적으로 후자를 지향하여왔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를 분석한다. 선진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기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의 설정에 참고를 하기 위함이다.

## 1. 미국

미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은 연방, 주, 지역학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 연방

미국의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현행 제도는 2004년 12월 4일에 개정되어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Public Law 108-446 즉, 장애아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 IDEA)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은 복지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가 주관하며, 주로 Head Start Act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 (1)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IDEA는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애영아와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체제를 제공하며, 장애영유아 교육의 실체를 개선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01조). IDEA는 4개장(A~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세 장애유아의 교육재정지원은 Part B(611~619조)에 근거하고, 0~2세 장애영아의 교육재정지원은 Part C(631~644조)에 근거한다.

연방재정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의 초과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을 주가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배정되는 교부금을 감소시킨다(Manasevit, et. al., 1997 : 65). 연방 교육부는 1975년 이후,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초과경비 지원을 40%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 ① 3~5세 장애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IDEA Part B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장애유아(3~5세) 교육재정은 연방에서 주에 제공하는 교부금이며, 3~5세 장애유아들 중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619조(a)(1)).

주정부가 본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연방이 요구하는 조건인 장애유아 교육정책으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장애영유아 발견’,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최소제한적환경조치’ 등 25가지 정책<sup>1)</sup>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612

조).

재정의 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 중 1997년도에 배정된 금액만큼을 주별로 기본재정으로 배정하고, 잔액 중 85%는 주별 3~5세 인구의 비율에 근거하여 배정하고, 나머지 15%는 주별 빈곤지역 3~5세 인구의 비율에 근거하여 배정한다. 주정부가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과년도에 배정된 재정과 여기에 전체 예산의 증액비율 + 1.5%를 곱한 금액의 합이다(619조(c)(2)). 주에 배정되는 재정의 양은 과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을 반드시 초과한다.

지역학구가 주 정부로부터 본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주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원받은 재정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초과경비로 활용하며, 장애유아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것 등이다(613조). 지역 학구에 재정을 배정하는 방법은 당해 연도 예산 중 1997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을 기본재정으로 교부하고, 잔액의 85%는 지역학구의 초·중등학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나머지 15%는 지역학구의 빈곤지역 거주 초·중등학교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619조(g)(1)).

주 정부 자체의 경비는 교부금 총액의 20%이하로 하며, 그 경비는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서비스, 직접서비스, 주 활동, 조기중재서비스, 장애유아 사례 가족관리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619조(e)). 연도별 교부금 총액은 1998년 380백만, 1999년 374백만, 2000년에 390백만\$이다(Fisher, 2000 : 102~104).

## ② 0~2세 장애영아 교육재정지원제도

IDEA Part C는 장애영아(0~2세)와 그 가족에게 조기중재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631조(b)(1)). 장애 영아의 개념은 발달지체를 가진 자, 발달지체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조기중재서비스가 요구되는 자, 위험에 처한 자(조기중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위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632조(5)). 조기중재서비스는 개별가족서비스 계획팀에 의하여 정의된 개별가족서비스계획에 일치하게 개별 장애영아의 발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정부가 연방의 본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영아 교육정책으로 최소한 '발달지체에 대한 엄정한 정의', '적절한 조기중재서비스체제', '장애영아 평가체제', '장애영아발견체제', '종합적 인사개발체제', '자연적 환경에서 적절한 조기중재가능성',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의 기초' 등을 갖추어야 한다(635조).

주에 대한 재정의 배정방법은 주별로 영아의 수에 근거하여 비율로 배정하며, 최소한

1) 기타 20개는 다음과 같다. 1) 절차상 안전, 2) 평가, 3) 신뢰, 4) 전환(걸음마아 에서 유아학교), 5) 사립학교 아동, 6) 장학책임, 7) 서비스보장 의무, 8) 지역학구 관련 절차요건, 9) 인사자격, 10) 성취목적과 지표, 11) 사정참여, 12) 주, 지역, 기타 연방재정에 보충, 13) 주 재정지원 관리, 14) 공공 참여, 15) 구성의 규정, 16) 주자문위원회, 17) 탈락과 퇴학율, 18) 수업자료에 접근, 19) 과도한 확인과 불균형, 20) 위임의료의 금지.

50만\$ 이상을 교부받는다(643조). 연도별 교부금 총액은 1998년에 373백만\$, 1999년에 418백만\$, 2000년에 441백만\$이다(Fisher, 2000 : 102~104)

## (2)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의 법에는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복지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헤드스타트법(the Head Start Act)이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은 주로 Head Start Act에 근거하여 Head Start Program(3~5세) 및 Early Head Start Program(임신모, 만0~2세)에 지원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법은 1965년에 발족되었으며, 현재는 1998년 10월 27일 P. L. 105-285으로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9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헤드스타트법은 23개조(635~6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유아와 가족의 요구에 근거하여 건강, 교육, 영양, 사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발달과 인지발달을 개선하여 학교 준비도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636조). 그리고 본 교부금의 13%를 장애영유아, 인디언 영유아, 이주민 영유아 등에 활용한다(640조(a)(2)). 2가지 Head Start Program 각각 정원의 10%를 장애영유아로 충원한다.

보육재정의 배정방법은 연방정부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총액에서 1998년에 주별로 배정받은 금액을 기본재정으로 교부받고, 잔액은 주내 빈곤가정 영유아(5세 미만)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다. 배정받은 재정은 주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경비의 80% 미만이다. 나머지는 주가 부담한다(640조).

보육 대상 중 3~5세 장애유아는 IDEA 602(3)조(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요구하는 발달지체 경험 자)의 개념 정의에 준하며, 3세 미만은 IDEA 632(5)조(발달지체 경험자 및 발달지체의 위험을 가지면서 조기중재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의 정의에 준한다(637조). 장애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원한다(640조(d)(8)). 미국 전 지역에 교부금의 균등한 분배를 지향한다. 총 예산의 5~10%정도를 기술과 훈련 지원에 활용하고(645조), 경비의 5%이하를 행정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의 제정과 연방의 재정은 2002년도의 경우 연간 총 230억\$ 정도가 지원되었다(Horn, 2003 : 2). 개별 Head Start Program 경영자는 연방에서 설정한 헤드스타트 성취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 2)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는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에서 운영하는 “The Fifteen Area Education Agencies(AEAS)”는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에 관련된 연방 법과 주 법의 규정을 실천하면서, 6세 미만 장애영유아들에게 관련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위한 연방 교부금과 주 재정을 관리하면서 지원한다.

주는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주들 중 0세부터 유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첫 주이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은 연방, 주, 지역학구의 재정으로 지원된다. 0~2세 장애영아의 교육경비는 주로 연방재정에 의존한다. 연방재정은 주로 지원서비스에 활용되며, 장애영아와 그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가정수업교사를 지원한다. 주와 지역의 장애유아 교육재정은 유아교육기관 장애유아의 교육경비에만 활용된다.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수교육가중공식을 통하여 제공된다. 경증 및 중간 정도 장애영유아들 중에 전일제는 가중치가 2.35이고 정시제는 1.68이며, 중증장애영유아들 중에 전일제는 가중치가 3.74이고 정시제는 2.37로 한다(Edmiaston, et. al., 1997 : 7). 가중치를 통하여 배정된 수업재정은 그 용도가 기관운영, 수업료, 수송경비, 기타 특수교육경비로 활용된다.

개별 장애영유아 단위로 배정된 재정(2.35인 경우)은 학구가 학급운영, 정규수송 및 행정과 같은 데 1.0을 활용하고, 그 외 가중치 1.35를 특수교육의 제공에 초과경비로 지출한다. 2.35가중치는 1.0은 기본재정이고, 1.35는 특수교육재정이다. 주와 지역재정이 개별 기준으로 배정되더라도 이들 재정은 지역학구가 운영하는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공동화된다. 지역학구의 특수교육재정은 특수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되지 못하면, 주에 반납된다. 특수교육재정이 부족한 경우, 예산검토위원회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Edmiaston, et. al., 1997 : 7).

일반영유아들과 통합된 상황에서 경비는 개별가족서비스계획(0~2세)이나 개별교육계획(3~5세)에 확인된 것에 근거하여 지출된다. 통합교육의 기회는 기존의 재정기제를 통하여 재정이 지원된다. 그러나 분리된 회계절차와 기관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사립 유아교육기관이 국가의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통합교육을 위하여 본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통합교육 상황에서 일반영유아는 요금을 징수하고, 일반영유아 수송에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을 지출할 수 없으며, 추가 보조원의 인건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유아교육기관은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경비가 너무 비싼 경우, 자체적인 부담을 감내할 필요가 없고, 주에 지원을 요청한다.

### 3) 버먼트주

버먼트주는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교부금으로 지원한다(Vermont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 7~8).

첫째, 통합교육포괄교부금(Mainstream Block Grants) : 통합교육 경비의 일부분을 지역 학구에 제공한다. 재정의 배정방법은 각 지역학구의 전체 학생 수(3~21세)에 근거하고, 주의 부담은 주 평균 교원급료의 60%정도이다.

둘째, 특별서비스배상교부금(Extraordinary Services Reimbursement) : 주는 각 지역 학구의 특별서비스경비의 90%를 부담한다. 특별서비스는 기본재정(일반 영유아 평균 교육재정)의 3배를 초과하는 장애영유아 당 경비로 정의된다. 지역학구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례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소규모 지역 학구에서 연간 10만\$가 소요되는 장애영유아가 있는 경우, 지역 학구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추가 지원한다.

셋째, 강력서비스교부금(Intensive Services Reimbursement) : 연방재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경비를 배상하며, 주 포괄교부금과 지역의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는 특별 경비이다. 재정은 각 지역 학구에 비율에 근거하여 배상된다. 지역 학구에 대한 배상은 각 지역학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 주의 공동부담이 주 전체적으로 50%정도이다.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은 개별 영유아를 따라가며, 영유아교육에 책임을 가진 지역 학구에 지불된다. 개별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도 영유아가 조치되는 곳에 관계없이 동일수준의 재정이 지원된다. 조기중재를 통하여, 고가의 특수교육 요구를 감소시켰고, 학교교육의 실패 위험이 높은 영유아의 조기 확인과 중재를 권장하며, 장애영유아의 서비스를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적절하면서 그 동료들이 살고 있는 가정의 인근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한다(Odden, 1998 : 23).

## 2.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에서 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Friendly, & Turiano, 2002 : 13). 연방의 지역 건강, 교육,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재정은 포괄교부금(The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으로 지역에 교부된다. 캐나다 영유아 교육·보육은 지방정부의 관할이다. 대개 유치원은 공교육체제의 일부이며, 5세에 등록한다. 일부지역은 4세 유아도 등록을 허용한다. 일부 주는 출석을 의무로 요구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일부 주의 사례를 분석한다.

### 1) 앨버타주

장애영유아를 위한 주의 재정 지원은 교육재정지원프로그램 및 수송경비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 ①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의 지원은 일반영유아의 기본교육 재정지원,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영유아 재정지원, 중증장애영유아 재정지원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을 위한 최소 연

령은 중증 장애는 2.5세,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는 3.5세, 일반유아는 4.5세, 발달상 미성숙 아동은 5.5세부터이다(Alberta Learning, Alberta Education Branch, 2002 : 7~9).

첫째, 기본교육재정은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되고,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영유아당 2,184\$이 지급되었다.

둘째,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유아의 교육재정은 3.5~6세 장애유아에게 기본수업재정에 추가하여 지원된다.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장애유아 당 2,070\$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셋째, 중증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재정지원은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Program Unit Funding)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2.5~6세 중증장애영유아에게 개인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본 교부금은 모든 등록된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기본교육재정에 추가로 중증장애영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교육프로그램에 제공된다.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의 지원은 학년 초에 신청한다.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은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영유아는 교부받을 자격이 없다. 중증인지장애, 중증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중증 중복장애, 중증신체장애나 외과장애, 농, 맹, 중증의사소통장애 영유아에게 지원된다. 추가적인 경비지원이 없이 일반영유아집단에서 교육·보육할 수 있는 중증장애영유아는 본 교부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 일반영유아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특수한 지원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영유아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의 평균 경비지원은 영유아 당 14,000\$ 이하이다. 영유아프로그램별로 등록된 영유아의 수에 따른 재정 지원액은 2002/2003학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다. 1명 : 20,864\$, 2명 : 26,039\$, 3명 : 31,214\$, 4명 : 36,389\$, 5명 : 41,564\$, 6명 : 46,739\$가 지원되었으며, 추가 1명 당 5,175\$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재정지원의 상한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계산된다. 800시간미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 수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500시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500/800을 곱한다.

교사의 인건비는 기본재정에서 지출되고,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수송비, 자본경비, 최대 800시간수업, 가정방문 36회 경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에 등록된 영유아들 중 70% 이상이 중증 장애영유아일 경우, 본 교부금에서 모든 프로그램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학년도 말에 경영자는 본 교부금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장애영유아 수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수송재정은 다음 3가지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Alberta Learning, Alberta Education Branch, 2002 : 15~40).

첫째, 일반수송재정교부금(Transportation-Regular Funding) :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2.4km 이상 거주자, 장애아로서 일반 수송수단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현장여행이나 프

로그램 활동상 수송경비를 지원한다. 기관의 버스, 대중교통, 부모에 의하여 수송될 수 있는 경우, 영유아 당 423\$가 지급된다.

둘째, 수송특별요구재정교부금(Transportation-Special Needs Funding) : 장애영유아(경증, 중간증, 중증 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나 나이(2.5~4.5세)로 특별한 수송수단이 요구될 경우 제공된다. 장애나 연령에 기인하여 일반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특수한 수송을 요구할 경우에 지원되며,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영유아 수송 1회 당 11.40\$를 제공하였다.

셋째, 가정단위프로그램수송교부금 : 중증 장애영유아의 경우 연 36회 이하, 다른 영유아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22회 이하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정수송에 관련하여, 수송교부금은 교사, 영유아발달전문가, 교사보조자가 영유아서비스 가정단위프로그램에 등록된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지급된다. 2002/2003학년도의 경우, 가정단위프로그램수송교부금은 최대 36회 방문에 회당 11.40\$가 지급되었다. 본 교부금을 초과하는 수송경비는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에서 담당한다. 현장 여행과 기타 수송의 경우,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에서 수송경비의 일부분으로 변제된다.

## 2) 퀘백주

장애영유아의 50%정도가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다. 이외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조치된다. 2001/2002학년도의 경우, 장애영유아 1,552명 중 778명이 유치원 일반학급에 입학하였다. 특수요구 영유아의 통합교육에는 추가 예산이 제공된다.

장애유아별 재정지원은 2001/2002학년도의 경우, 유치원 5세 일반유아 1인당 평균 1,694\$가 지원되었고, 장애유아는 1인당 3,300\$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2,000\$의 1회 교부금과 정상적 운영경비 교부금으로 최대 유아 당 일일 21\$가 추가로 지원된다(Friendly, & Turiano, 2002 : 64).

기관운영비 지원교부금은 인허된 연간 공간, 연간 점유 공간, 연간 점유율을 반영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월단위로 제공된다. 2001/2002학년도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유형별 재정의 지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유아보호센터에 대한 기본재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경비는 실제 경비나 첫 30개 공간에 36,000\$, 다음 30개 공간의 각각에 1,200\$, 60개 이상 공간 당 1,000\$를 추가한 금액을 지원되었다. 초과경비는 첫 60개 공간의 각각에 1,850\$, 추가 공간 당 각각에 850\$이며, 최소 51,000\$가 지원되었다. 영유아 교육·보육 경비는 17개월 이하 영아 당 일일 46.15\$, 18~59개월 영유아 당 일일 29.95\$가 지원되었다.

둘째, 가족영유아보호시설에 기본재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경비는 실제 경비 혹은 첫 50개 공간 각각에 250\$, 추가 공간 당 140\$을 추가한 금액이 지원되었다. 초과경비는 첫 50개 공간의 각각에 1,450\$, 다음 100개 교실의 각각에 860\$, 150개 추가 교실 당

790\$를 합하여 지원되었다. 영유아 교육·보육 경비는 59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일일 최대 25.40\$, 17개월 이하 영아에게 일일 9.00\$가 추가 지원되었다.

장애유아 통합교육·보육을 위한 교부금(Allowances for the Integration of a Child with a Disability)은 59개월 이하 장애영유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최대 9명에게, 인허된 학급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가정영유아보호 제공자 당 1명의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었다. 장애영유아 당 2,200\$가 지원되고, 장애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설비나 개선을 위하여 기본재정 1,800\$에 추가로 근무한 일일 당 25\$가 지원되었다(Friendly, & Turiano, 2002 : 76).

## IV.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1. 실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유아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관련된다.

#### 1)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는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제2조),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24조).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유치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6조).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본 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본 법 시행령 제5조②항).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본 법 시행규칙 제7조).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3조②항).

“장애인복지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18조)고 규정한다.

## 2)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지원은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영유아보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제28조②항). 그리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는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제29조). 만5세 유아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본 법 시행령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본 법 시행규칙 제35조).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상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①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영유아보육사업지원은 서울은 국고를 20%, 지방은 국고를 50%를 지원한다(제4조, 별표1).

2006년도 현재 장애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05년도 보육예산이 600,091백만원에서 2006년에 791,008백만원으로 31.8% 증액되었다. 장애영유아진단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을 2005년에 월15만원에서 2006년에 월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보육료 지원 단가도 2005년 299천원에서 2006년 장애

영유아전담시설 350천원으로 17% 인상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 15~16). 장애영유아전담시설 신축비 지원은 2005년에 지원 단가 2,392천원/평 및 지원기준 40%에서 2006년에는 지원 단가 3,610천원/평 및 지원기준 50%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 26).

## 2. 문제점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상태(학문적 원리 및 이론)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이 장애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기관별·연령별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정지원이 장애유아의 개별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장애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은 개별 장애유아의 교육·보육 요구에 근거하여 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장애유아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유아가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06 : 186)면서,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350천원)의 50%(175천원)를 지방정부에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06, 174). 지방정부는 장애유아 개인의 개별교육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배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유아에게 기관별·연령별로 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재정은 2005년에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80% 지원에서 2006년에 장애전담교사인건비 80%(민간시설은 100만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는 장애아 1인당 249천원을 정액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06, 23).

장애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유아가 소속된 유치원 원장이 수립하고, 교육재정은 기관별·연령별로 장애유아 당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장애유아의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90천원(연 1,080천원)을 정액 지원하고, 사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311천원이 정액 지원된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4).

장애영유아의 장애정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 특히, 연간 많은 교육·보육경비가 요구되는 중증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이 없다. 미국의 경우, 고가의 교육비가 요구되는 중증 장애영유아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가 경비지원의 기준은 Maryland주는 영유아 당 일반영유아 평균경비의 3배를 초과하는 경비, New York주는 영유아 당 평균경비의 4배나 1만\$를 초과하는 경비, Missouri주는 영유아 당 평균경비의 5배 초과경비, Utah주는 15,000\$ 초과경비, New Jersey주는 4만\$ 초과경비, Vermont주는 5만\$ 초과경비, Washington주는 15,000\$ 초과경비를 주에서 지역 학구에 배상한다(Miller, 1999 : 32).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06년 현재 만0세는 350천원, 만1세는 308천원, 만2세는 254천원, 3~4세는 158천원이다. 민간시설의 기본보조금 지원은 만0세는 249천원, 만1세는 104천원, 만2세는 69천원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계층(도시지역 : 90%, 농촌지역 : 100%) 유아에게 보육료 158천원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06, 21). 장애영유아 보육경비는 만0세는 350천원, 만1세는 308천원, 만2세는 254천원, 3~4세는 158천원이 지원되어(여성가족부, 2006 : 192), 저소득계층 일반영유아나 장애영유아의 보육경비 지원은 동일하다.

문제점 2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이 무상이지만, 수업경비 무상에 치중하면서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경시되고 있다.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은 장애영유아 개인의 요구에 근거하여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IDEA 602조(9)). 그런데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이 교육활동에 치중하고, 관련서비스 경비의 지원을 경시한다.

‘관련서비스’는 장애영유아가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요구되는 수송, 언어치료, 청각서비스, 해석서비스, 심리서비스, 신체치료, 레크리에이션, 사회사업서비스, 간호서비스, 상담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이동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개념적으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한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의미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①항).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훈련을 의미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⑦항).

장애유아교육의 개념은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유아교육법제15조①항)”을 의미하며, 장애영유아보육의 개념은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영유아보육법제28조②항)”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범위가 수업활동 및 치료교육에 한정되고, 이외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관련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실제 유치원의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방법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한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4).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 보육비가 저소득계층의 유아교육·보육비 지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학구차원에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출이 평균적으로 수업활동에 60%, 관련서비스에 40% 정도가 된다(Hadderman, 2001 : 30).

문제점 3 : 영아(0~2세)의 교육재정 및 조기중재를 위한 개별가족서비스에 대한 재

정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 유치원은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설은 0세~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영아도 교육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도상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대책과 그에 대한 특수교육재정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예방과 조기중재에 근거한 모델 대신에 영아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모형을 사용한다.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요구되는 특수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영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치료적 접근보다 예방적 접근이 장애영아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예방적 접근은 가족에게도 직접적으로나 장기적 결과에서 더 유익하다(Shonkoff, & Meises, 2000 : 69). 부모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능력을 개선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그리고 재정지원도 거의 없다.

문제점 4.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를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 지원은 장애를 가진 자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유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유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장애유아, 둘째,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4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셋째, 장애진단서는 단순한 의사소견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애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다. 장애진단서는 1년 마다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06 : 173). 선정기준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유아 교육재정의 지원도 대상자의 선정을 복지카드(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 증명서 중 택 1)에 의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장애유아 및 만 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이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1), 지원의 목적은 장애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성장 발달 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장애위험 유아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포함하여 선정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 2). 그러나 장애 위험 유아의 선발과정에서 판정과 확인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영유아이지만 특수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자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일반영유아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자에게는 예방차원에서 조기중재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과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개념적으로 장애유아는 유아교육에서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를 가진 자”(유아교육법 제15조제①항)로 정의하며, 영유아보육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8조①항2)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대상은 장애영유아들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2항). 따라서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은 제도적으로 장애가 야기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방치할 경우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자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점 5 :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재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을 일반유아 교육재정에 비교한 적정성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반화된 표준 교육·보육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균등한 보육기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경비는 일반학교 교육경비의 2~5배정도 소요된다(Ascher, 1993 : 3). 장애유아의 교육재정의 경우, 일반유아 교육재정의 평균 교육경비에 특별경비 130% 제공을 요구한다(Odden, 1999 : 43).

<표 1> 보육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여성가족부, 2006 : 192)

구분	지정주체	인건비지원 (교사1인)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보육료지원 (유아별)장애 영아
1. 장애아 전담지정시설 : 장애아를 18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인건비 지원(기존지정시설)	시도지사	60%		350천원
.민간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시군구청장		249천원	35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시설 :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는 시설				
.인건비지원 : 배정물량 범위 (정부지원시설·민간시설중 지원)	시군구청장	80%, 100만원		350천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중 미지원 시설)	시군구청장		249천원	350천원
3. 일반보육시설 : 장애아 전담·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외의 보육시설				
정부지원 시설	.0세(1대 3기준)	80%		350천원
	.1세(1대 5기준)	80%		308천원
	.2세(1대 7기준)	80%		254천원
	.유아반	30%		158천원
민간보육 시설	.0세(1대 3기준)		249천원	350천원
	.1세(1대 5기준)		104천원	308천원
	.2세(1대 7기준)		69천원	254천원
	.유아반			158천원

여성가족부는 장애영유아보육도 장애유아의 개별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더라도 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3~4세(유아반) 장애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육시설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월 158천원을 정액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는 월 311천원을 정액 지원한다. 장애유아에 지원되는 보육재정 158천원은 저소득계층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재정 158천원과 동일하다. 장애유아의 보육비는 유치원 교육비에 비하여 너무 적은 액수이다.

만5세 일반유아의 무상교육비 지원은 사립은 월 158천원 이내(급식비 지원 가능), 국·공립은 월 53천원 이내 지원한다. 유치원 장애유아의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90천원(연 108만원) 정액 지원하고, 사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311천원을 정액 지원한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3~4).

## V.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의 개선된 장애유아 교육·보육제도를 가정하면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궁극적인 개선방향은 모든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요구를 100%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선방향 1. 장애유아(3~5세) 교육·보육재정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은 모든 장애유아들에게 균등성이 아니라 적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정된 유아 당 경비를 지원하기보다 장애유아별로 실제 경비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개별 장애유아의 구체적 산출에 초점을 둔 개별화교육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영유아 당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시·군·구 교육청이 장애유아에게 교육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아별로 개별화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와 같이 장애 교육기관 및 연령에 근거하기보다 장애유아의 장애상태에 따른 요구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장애유아근거재정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장애유아 교육재정의 배정단위는 개별 장애유아이기 때문에, 장애유아 교육재정을 장애유아별 교육목적 및 교육방법,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중증 장애유아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에 소요되는 과도한 경비는 시·군·구

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중증의 장애유아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차원에서 지역 학구를 특별히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개선방향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은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애영유아 무상의 공 교육·보육의 개념을 특수한 수업과 치료교육 이외에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정의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별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서비스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여 장애영유아별로 요구되는 관련서비스에 대한 처방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영유아의 현재 상태, 연간목적, 목적성취방법, 요구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보충적 보조와 서비스 등을 진술한다. 교육경비는 유아교육·보육기관에 교육·보육재정으로 지원하고, 관련서비스의 지원 경비는 당해 시·군·구 교육청에서 사례별로 지원하도록 한다.

개선방향 3. 장애영아(0~2세) 교육재정 및 개별가족서비스재정을 확충한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의 대상을 현재 장애유아(3~5세)에서 장애영유아(0세~취학 전)로 확대한다. 즉,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 3세 미만 장애 영아에게는 특수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특수교육지원 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능성이 높은 영아에 대해 연 4회 선별검사 무상으로 실시하며, 영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정비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러나 영아에 대한 특수교육대책은 교육시설 이외에 가정방문을 통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확충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영아별로 “개별가족서비스계획”(가칭)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장애영아의 부모교육을 비롯한 가족지원은 장애영아의 교육·보육 상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족 지원은 그들이 건강한 보호, 조기보호와 교육, 가족지원, 지역사회형성과 발달을 밀접히 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에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교육청차원에서 가족지원체제는 단절된 서비스들을 종합적서비스체계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장애영아 가정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들을 종합적인 체계로 제공하도록 한다.

3~5세 장애유아는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이 지원되지만, 장애영아는 개별가족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개별가족서비스계획은 가족훈련·상담·가정방문, 특수수업, 특수언어치료, 직업치료, 심리서비스, 진

단적·평가적 목적의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사회사업, 시각서비스, 지원적기술장치, 수송과 관련 경비, 가능한 한 자연적 환경에 조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학문 팀에 의하여 개발되고, 6~12개월마다 재검토하도록 한다.

개선방향 4.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을 ‘장애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장애가 야기될 때까지 기다려 치료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접근모형을 강조해야 한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중재를 하지 않고, 장애가 야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방치하면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확인하여 중재하도록 한다. 장애를 예방하여 긍정적 결과를 촉진하는 데 재정을 투자하여 야기된 장애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및 복지의 높은 경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원을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와 방치할 경우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예방 전략은 빠를수록 더 좋다. 따라서 임신에서 5세까지로 하되, 우선순위는 2세 이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기간의 발달과 학습은 매우 빠르며, 그 결과는 이후 학습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 시기의 발달은 건강과 영양에 밀접히 관련된다.

미국의 경우, IDEA에 근거하여 장애의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하여 재정을 지원한다. 유치원~12학년 학생들 중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필요 없지만, 일반학급에서 학업의 성공을 위하여 행동적·학업적 지원이 요구되는 자들에게 특별로 교부받은 IDEA교부금의 15%미만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IDEA 613조(f)).

개선방향 5. 장애영유아 보육경비를 현실화한다.

장애영유아는 조치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조치되더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3~4세 유아반 장애유아의 보육재정은 저소득계층 유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데, 이를 유치원 장애유아 교육재정 수준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VI. 맺는 말

본 연구는 현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를 근거로 문제점을 규명하였지만,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장애유아 교육권·보육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발전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를 전제로 하여 마련하였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육을 제공 받는 장애영유아의 비율은 전체 장애영유아의 64.3%정도이다(연합뉴스, 2006). 장애영유아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수혜를 확대하면서 모든 장애영유아가 무상의 적절한 교육·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재정의 적정성 및 균등성의 증대, 조치 중립, 특수교육의 실제 경비에 근거한 재정이 지원되고,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규정은 국가 전반에 통일되어야 하고, 태어난 지역의 부와 관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은 예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조기에 예방적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강력하고 경비가 더 비싼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데에서 가족과 영유아가 문제를 예방하도록 돕는 긍정적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개별 장애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가족서비스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영유아에게는 교육, 보호, 건강과 복지, 가족 지원의 통합된 접근이 요망된다. 모든 가족과 영유아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의 차이와 영유아의 연령, 발달단계, 특수요구의 차이에서 가족의 요구에 반응하는 조정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종합적 정비가 요구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가족이 부담하는 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정책이 장애영유아의 최소제한적환경조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관에 따라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에 차이가 있다. 재정은 장애영유아의 잘못된 확인에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조치에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영유아에게는 무조건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수한 교육·보육이 요구되는 자에게 개별교육프로그램이나 개별가족서비스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으로 교육·보육 기회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의 현실화 및 합리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만 문제점을 다룬 제한이 있다.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이 증대하면서 재정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재정의 활용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정의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무성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포항교육청(재무과)(2006, 2).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 경상북도포항교육청(2006). 2006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 교육인적자원부장(2006. 9. 1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7호.
- 여성가족부(2006). 2006 보육사업안내 : 보육시설용.
- 연합뉴스(2006. 8. 29. 화, 12 : 04). 장애인 통합교육 거부하면 징역형 ; 장애학생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확대.
- Alberta Learning, Alberta Education Branch(2002). *Program unit funding : a handbook for ECS operators in the 2002/2003 school year*. Canada. Alberta, Minister of Learning.
- Ascher, Carol(1993). *Efficiency, equity, and local control-school finance in Texas*. ERIC Clearinghouse on Urban Education, N.Y ED357 130. ERIC Digests. file://AI/ed357130.html.
- Connecticut University, Health Center(1996). *Inclusion : a right, not a privilege*. Special Education Programs, Washington, DC. ED 407 816.
- Danaher, Joan(2001). *Eligibility policies and practices for young children under Part B of IDEA*. NECTAE Notes. National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Chapel Hill, NC. ED 471 883.
- Edmiaston, Rebecca, Debra R. Hansen, House-D. Deb, & Penny Milburn(1997). *Iowa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handbook*. Iow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es Moines. Divis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ED 418 521.
- Fisher, Hansine(2000). *Federal funding for early childhood supports and services : a guide to sources and strategies*. Finance Project, Washington, DC. ED 444 763.
- Fraser, Katherine(1996). *What will it take? : standards-based education reform for all students*. Center for Policy Research on the Impact of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Reform, Alexandria, VA. ED 401 695.
- Friendly, M., J. Beach, & M. Turiano(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1. Fifth Edition. ED 474 488.
- Hadderman, Margaret(2001). *School finance. trends and issues*. ERIC Clearinghouse on Educational Management, Eugene, OR. ED 459 541.
- Hansen, Janet S.(2001). *21st century school finance : how is the context changing?*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Denver, Co.
- Hayes, Cheryl D.(1997). *Financing services for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meeting the challenges of welfare reform*. Finance Project, Washington, DC. ED 423 082.
- Horn, Wade(2003). *Assistant secretary for childcare and familie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before the Subcommittee on Education Reform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1998). *A parent' guide :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vised 1998. Springfield,
- Manasevit, Leigh M., Karen S. Lovitch, & Christine Olagata-Neubauer(1997). *Opportunities & challenges : an administrator's guide to the new IDEA*. American Association of

- School Administrators, Arlington, VA. ED 415 649.
- Miller, Shelby H. et al.(1999). *Family support in early education and child care settings : making the case for both principles and practices*.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Cambridge, MA.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Alexandria, VA.
- Ministry of Education(2001). *Introduction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iscretionary grants scheme*. New Zealand. [http://www.minedu.govt.nz/web/document/document\\_-page.cfm?id=4387&p=1037.1038.4334](http://www.minedu.govt.nz/web/document/document_-page.cfm?id=4387&p=1037.1038.4334).
- Myers, Robert G.(June, 1991).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 why we should invest and some suggestions about what can be done*.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ultative Group on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http://www.ecdgroup.com/archive/develop.html>.
- Noonan, M. J., & L. McCormick,(1993). *Early intervention in natural environments*.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Publishing Co.
- Odden, Allan(1999). *"Improving state school finance systems : new realities create need to re-engineer school finance structures."* CPRE Occasional Paper.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_\_\_\_\_(1998). *Creating school finance policies that facilitate new goals*. CPRE Policy Briefs. Consortium for Policy Research and Improvement(ED), Washington, DC. ED 424 696.
- Ohio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2000). *Model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lumbus,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ED 451 637.
- Scrivner, Scott, & Barbara Wolfe(2002). *Universal preschool : much to gain but who will pay?* Working Paper Series. Foundation for Child Development, New York. ED 473 930.
- Shackelford, J.(2002). *State and jurisdictional eligibility defini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under IDEA*. National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Notes. ED 471 884.
- Susman-Stillman, Amy, & Wendi Schirvay(2000). *University-community model for connecting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ED 443579.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1997).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al needs*. Paris : France ED 422 679.
- U. S. Department of Education(2006).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in its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IDEA.
- Vermont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1997). *Vermont special educational : expenditures, equity and outcomes*. ED 407 779.
- Yudof, Mark G., David L. Kirp, Betsy Levin, & Rachel F. Moran,(2002). *Educational policy and the law*. Fourth Edition, Thomson Learning, United State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Kwon, Ki-uk**

Professor,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For achieve this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ies and the research results which are related the education and care principles,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principle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in the primary foreign nations which are America and Canada a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presents five problems of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Those problem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lated services funds for those are lack. Second, the linkage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with finance support system is shortages. Third, the finance support systems does not meets their unique needs. Fourth, the same mounts money are provided same institution and ages. Fifth, the fund does not provided of risk infants and early childhoo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For improvement directions of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s, First, the funds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should be based o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Second, the education and care funds must be provided for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hird, the care expense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ctualized. Fourth, the funds for infants education and individualized families suppor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fth, the funds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ovided risk infants and early childhood.

**Key words:**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nd care finance.

---

논문 접수: 2006. 11. 15

심사 시작: 2006. 11. 17

게재 확정: 2006. 12. 27